

「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」 사업 공고[연장]

환경 분야 기술·설비의 상용화 촉진과 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하고자 「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니,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01.28.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

1. 사업 목적

- 중소·중견기업이 보유한 환경 분야 기술 및 설비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실증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
 - (공급기업) 현장 실증데이터(Track Record)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
 - (수요기관) 환경 기술·설비 적용으로 기관의 환경현안 해결

2. 지원대상 및 규모

- (지원대상) 환경 분야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(참여기관)
 - (공급기업)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*를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
 - * ① 등록특허권이 확보된 기술(법인 명의를 원칙으로 하고,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명의 인정), ② 녹색인증기술 ③ 환경신기술 中 하나를 보유한 업력 2년 이상인 기업
 - (수요기관) 실증장소를 제공하고 설비 도입 및 활용으로 현장 실증을 지원하는 대·중소·중견기업, 지자체, 공공기관 등
 - ※ 컨소시엄은 1개의 수요기관과 1개 또는 복수의 공급기업으로 구성될 수 있음
- (지원내용) 수요기관 내 환경 기술 및 설비 제작·설치 소요 자금
- (지원분야) ① 기후대응, ② 청정대기, ③ 물환경, ④ 순환경제, ⑤ 환경보전·보건 등 환경 전분야 [덧붙임1 참조]

- **(지원기간)** 협약일 ~ 2026.12.31.
- **(지원규모)**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(17개 내외)
 <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>

구 분	국고보조금	민간부담금
중소기업	70% 이하	30% 이상
중견기업	50% 이하	50%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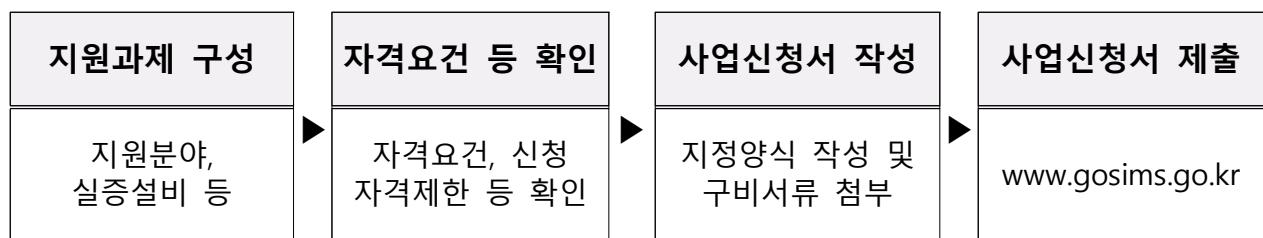
※ 공급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 차등 적용, 민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구성 가능하며 민간 부담금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공급기업 및 수요기관 간 사전 조율 후 결정

3. 공고 및 접수 일정

- **(공고기간 연장)** 2025. 12. 19(금) ~ **2026. 01. 30.(금) 까지**
 - ※ 기존 공고기간 : 2025. 12. 19(금) ~ 2026. 01. 27.(화) 까지
- **(접수기간 연장)** **2026. 01. 12(월) ~ 2026. 01. 30.(금), 18:00 까지**
 - ※ 기존 접수기간 : 2026. 01. 12(월) ~ 2026. 01. 27.(화) 까지
 - ※ 접수는 e나라도움을 통해서 하여야 하며,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시 불인정

4. 신청방법

- **(신청방법)** 사업공고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,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, www.gosims.go.kr)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


※ 시스템 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등은 e나라도움 누리집 사용자매뉴얼 참조
 ※ 공급기업 및 수요기관은 한 개의 과제에만 신청 가능

[e나라도움 사업신청 절차]

-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[주관기관 아이디로 로그인] ⇒ ② [사업수행관리] ⇒
- ③ [신청관리] ⇒ ④ [사업신청관리] ⇒ ⑤ 공모현황 ⇒
- ⑥ 공모명 선택(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) 후 [신청서 작성] 클릭
→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(사업신청서 등) 파일 첨부 → [신청서 제출] 클릭
- ※ (주의사항) 주관기관이 신청기관 정보내역 작성 시 “컨소시엄 추가”를 클릭하여 주관기관 외 공급기업 및 수요기관 정보를 필히 등록하여야 함

- **(제출서류)**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1식 [덧붙임2 참조]
 - ※ 사업 공고문에서 제공하는 압축파일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의 임의변경 불가
 - ※ 본 사업 신청 관련 제출서류(1~20번) 목록 참조(필수서류 누락 시 미제출 처리)
☞ 1번(사업신청서), 2번(사업계획서, 과제카드)의 별첨(엑셀파일) 작성·제출 필수
- **(참고사항)** 제출서류 작성 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(www.keco.or.kr)에서 사업계획서 샘플 및 우수사례, 자주하는 질문/답변 참조
 - ※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접속 후, 국민참여→동반성장→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선택
☞ <https://www.keco.or.kr/web/lay1/S1T268C1166/contents.do>

5. 지원자격

- **(공급기업)**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하고 실증자료 확보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함
 - ※ 설비 공급기업이 복수인 경우 각 기업별 환경기술 권리 보유 등 지원자격을 각자 만족하여야 하고, 해당 기술·설비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함
 -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*를 보유(공고일 기준)하여야 하고, 설비 공급기업은 설비 수요기관이 될 수 없음
 - * ① 등록특허권이 확보된 기술(법인 명의를 원칙으로 하고,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명의 인정) ② 녹색인증기술 ③ 환경신기술 中 1개 이상 필수
 - ※ 특히 실시권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경우, 권리 계약기간은 사후관리 기간을 포함하여야 함

- 설비 공급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참여기관을 대표해 사업을 신청 하며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
※ 선정평가시 발표는 수행책임자가 하여야 하며, 관리지침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
- **(수요기관)** 환경설비 도입으로 공급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하고 환경현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1개 또는 복수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
 - 설비의 설치장소는 수요기관이 소유(또는 운영·관리)하고 정상적인 운영 및 가동 중으로 도입 설비는 협약 기간 내 설치하여 시운전이 가능하여야 함
- 관리지침 제13조(신청자격의 제한)에 따라 다음의 하나에 해당(공고일 기준)하는 참여기관에 대하여 본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[참여제한 기준]

- 부도 또는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- 휴·폐업 중인 경우
- 관리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
-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
-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% 이상인 경우

$$\text{자본잠식률}(\%) = [(\text{자본금} - \text{자기자본}) / \text{자본금}] \times 100$$
-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·영업·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같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
- 최근 2년 이내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최근 3년 이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사업 공고일 이전 가장

최근 공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

- 최근 3년 이내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사업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표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
-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(해당 과제에 한함)
- 사업화(매출발생)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
- 소송 등으로 인한 가압류가 진행된 사업장인 경우

6. 유의사항

◆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관리 지침」 및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 및 규정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참여기관에게 있습니다.

- **(부가가치세)** 국고보조사업의 지원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으로 한정되며 부가가치세는 자체 재원으로 지급 필요
- **(견적서 제출)** 비목 중 유형자산 및 건설비에 대해 계약 건수별 본견적서 1개, 비교견적서 2개 이상을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(인증서, 시험성적서 등) 제출
※ 사업계획서의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해야 함
- **(원가계산서 제출)** 서면평가를 통과한 신청과제는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에서 지정한 기간 내 원가계산전문기관(기획재정부·행정안전부 등록기관)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제출 필수
※ 소요 비용 참여기관 자부담

- **(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)** 협약 체결 시, 협약기간에 가산기간(3개월)을 포함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
 - ※ 소요 비용 참여기관 자부담
- **(컨설팅 기관)** 주관기관은 관리지침 제5조에 따라 컨설팅기관을 지정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
 - ※ 소요 비용 참여기관 자부담
 - 주관기관의 컨설팅기관 지정·위탁 및 컨설팅 추진 결과, 기대효과 미흡 등의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(전담기관)과 무관하고, 민·형사상의 책임이 없음
- **(사전 계약발주 및 체결 불가)** 협약 체결 이전에 계약 발주 또는 설비 제조업체(또는 시공업체)와의 계약 체결 시 해당 선정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보조금 환수
- **(계약 체결 규정 준수)** 「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- **(중요재산 등록)**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취득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
- **(설비 처분제한)**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성과물을 양도, 대여, 담보의 제공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보조금법」 제35조를 준용하여 적용
- **(사업관리)**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, 주관기관은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,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**(사후관리)** 사업종료 후 5년간 사업효과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함
- **(컨소시엄)** 설비 수요기관과 설비 공급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협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, 도입 기술·설비의 제작·설치 등에 있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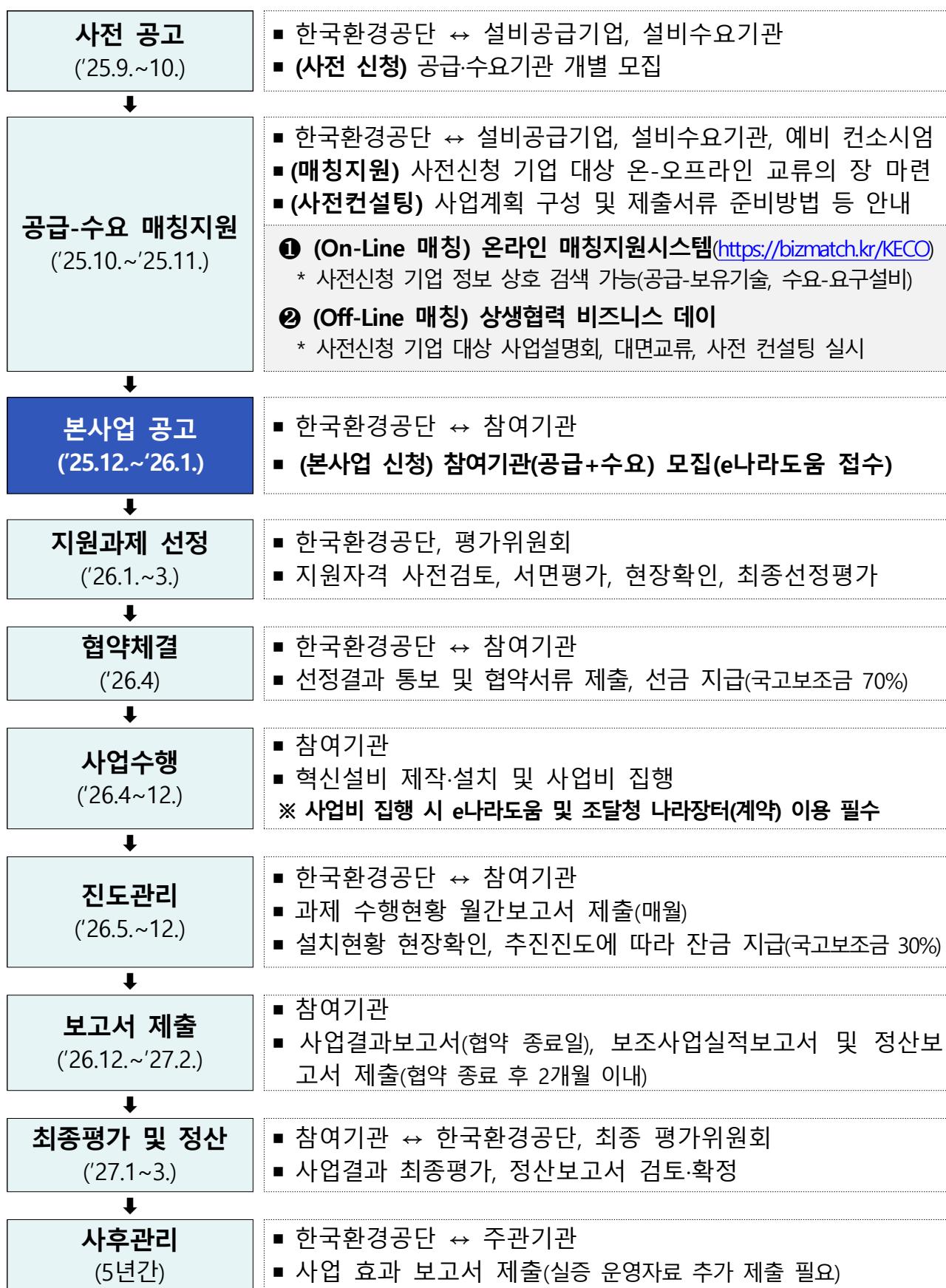
참여기관과 계약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일체의 분쟁, 도입 기술 · 설비의 설치 · 구축 · 운영 등의 안전성 · 신뢰성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(전담기관)과 무관하고, 민 · 형사상의 책임이 없음

- **(인허가 사항)** 지원과제 추진에 있어 행정 인·허가사항(개발제한구역, 그린벨트 등)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(소음발생, 조망권 침해 등) 및 기타사항(사업포기 등) 등 발생 시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(단, 민원은 1개월 이내에 해결 불가능할 경우에 한함)

7. 사업비 지급, 계상, 관리 및 사용

- **(지급)** 국고보조금 70%를 선금으로 지급하고, 진도관리를 통해 사업 수행의 계속 여부가 결정된 참여기관에 한하여 30% 잔액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
- **(계상·관리·사용)**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 계상 후 국고보조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하여 지원과제 선정 이후 신규 계좌를 개설·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동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시스템을 사용 하여 집행 [덧붙임4 참조]
- **(정산)** 검증기관(회계법인)의 검증이 완료된 정산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제출
※ 국고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지원기업은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 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며, 국고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위의 감사인과 별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**(위반사업 등에 대한 제재)** 참여기관이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

8. 추진 절차



* 세부내용 및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9. 선정 및 평가

< 지원 대상 선정 절차 >

공고·점수	사전검토	서면평가	원가계산	현장조사	선정평가
신청서 제출	자격요건 검토	서류평가 (60점 미만 탈락)	사업비 사용계획 검토	수요기관 현장확인	발표평가 (60점 미만 탈락)
참여기관	공단	평가위원회	참여기관	공단	평가위원회

- **(사전검토)** 참여제한(유사과제 해당여부, 휴·폐업 기업 등) 등 사전검토를 통해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및 필요 시 제출서류 보완 요청
- **(서면평가)**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목적 부합성, 사업 적정성 및 기업역량, 사업예산 합리성,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
 - ※ 서면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당해연도 사업 계획 물량의 2배수 범위의 신청 과제에 대하여 선정평가 대상 선정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
- **(원가계산)** 서면 평가 결과에 따른 선정평가 대상 과제의 주관기관은 사업비에 대해 원가계산전문기관(기획재정부·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)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선정평가 이전까지 제출
 - ※ 소요 비용 기업 자부담
- **(현장조사)** 서면평가 결과에 따른 선정평가 대상 신청과제 현장조사 실시
- **(선정평가)**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목적 부합성, 과제수행체계 및 역량, 사업내용, 기술 혁신성,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
 - ※ 선정평가 시 수행책임자가 발표 및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기업과 수요기관 각각 담당자 1인 필수 참석

< 서면 및 선정평가 평가항목 >

구분	평가항목	비고
서면평가 (1단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목적 부합성(부합성, 달성도, 적용기술 혁신성) ■ 사업 적정성 및 기업역량(목표 적절성, 재무현황) ■ 사업예산 합리성(예산 적정성, 사업비 편성 타당성) ■ 기대효과(사업성, 환경.사회적 효과성) 	40점 25점 15점 20점
선정평가 (2단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목적 부합성(사업대상 관련성, 혁신기술 여부 등) ■ 과제수행체계 및 역량(수행체계 적절성, 경영역량 등) ■ 사업내용(사업계획서 완성도, 사업비 산정 적정성) ■ 기술 혁신성(처리성능, 경제성, 유지관리 편의성) ■ 기대효과(사업성, 환경.사회적 효과성) 	30점 20점 15점 20점 15점

* 서면평가종합점수 = 서면평가점수 + 가감점 [덧붙임3 참조]

* 최종종합평가점수* = (서면평가종합점수 × 0.3) + (선정평가점수 × 0.7) [덧붙임3 참조]

*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해 연도 사업비를 고려해 “지원과제”와 “후보과제” 분류

10. 협약체결

- 지원 과제로 최종 선정 후, 사업계획서, 원가계산서 등 협약체결 관련 서류가 구비 완료된 참여기관에 한하여 협약 진행
 - ※ 최종 선정과제의 주관기관은 원가계산서 및 선정평가 위원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수정 제출
- 사업계획서 수정이 완료된 주관기관은 협약서를 작성, 지급보증보험증권, 신규개설 통장 사본,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및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증,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
 - ※ 협약기간에 가산기간(3개월)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, 제출기한 내 협약체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조치
- 협약에 관련된 모든 증빙과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협약 체결
 - ※ 국고보조금은 민간부담금이 선 입금 된 후 지급

11. 진도관리

-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은 참여기관 진도관리(월간보고 및 현장방문 등)을 통해 수행실태 및 사업 계속 여부 결정
 - ※ 진도관리 결과 “양호”인 경우에만 잔금(30%)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

12. 결과보고 및 평가

- **(결과보고)**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목표 달성 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에 제출
 - ※ 사업 목표 검증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
- **(결과평가)**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은 사업결과보고서가 모두 제출된 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결과평가 실시
 - 평가결과 평점 60점 이상 “성공”, 60점 미만 “실패”로 분류
 - 성공과제 중 평점 85점 이상 “우수”
 - ※ “실패” 판정된 과제 및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과제는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 제한 및 국고보조금 환수 등 제재조치 진행

13. 성과활용

- **(보조사업실적보고서)**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
- **(사후관리)**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업효과보고서를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에 제출
 - 사후관리 수행 다음연도의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수행책임자 변경 등 사업내용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함
- **(성과활용)** 지원과제의 성과물은 전담기관(한국환경공단)이 본 사업의 홍보 및 우수사례 선정, 선도모델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음

14. 문의처

- **(사업운영)** 한국환경공단 K-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
 - (TEL) 032-590-4905, 4903, 4818
- **(e나라도움)** 회원가입, 사업신청, 시스템 매뉴얼 안내 등
 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고객센터 (TEL) 1670-9595
- **(조달청)** 기업등록, 계약체결방법 안내 등
 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고객센터 (TEL) 1588-0800

덧붙임1

지원내용(분야) 및 사업비 구성 비율 기준

1. 지원 내용

분야	주요 기술유형
기후대응	온실가스 포집·정제·저감, 폐열 및 폐에너지 이용·회수, 재생에너지(바이오·폐기물·수열 등) 생산 및 활용 시설, 바이오매스의 연료 전환 및 활용, 바이오가스 정제·공급·이용 등
청정대기	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관리, 악취물질 배출 저감 및 관리, 대기오염물질 측정·분석·감시, 악취물질 측정·분석·감시 등,
물환경	수질오염 관리, 물 재이용, 하·폐수 및 정수 고도처리, 상하수도 관리, 지능형 물관리 등
순환경제	폐기물 저감(처리·처분, 감량화 등), 폐기물 분리·선별·전처리, 폐기물 순환 이용(회수, 재사용, 재생이용, 재활용 등), 폐배터리 전처리·재사용 및 재이용, 폐플라스틱 재자원화 및 열분해 등
환경보전 ·보건	토양, 하천 등 생태계 복원, 소음·진동 방지 저감,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관리 등

2. 사업비 구성비율

공급기업	총사업비 구성	비율(%)
중소기업	국고보조금	총사업비의 70% 이하
	민간부담금	총사업비의 30% 이상
중견기업	국고보조금	총사업비의 50% 이하
	민간부담금	총사업비의 50% 이상

*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 “중견기업”이란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
덧붙임2

신청 관련 제출서류

구분	순번	첨부서류		수량 (부)	비고
공단 양식 작성 서류	1	참여기관	[별지2] 사업 신청서	1	※ 사업 신청서, 사업계획서, 과제 카드(엑셀파일, 별첨) 작성·제출
	2	참여기관	사업계획서	1	
	3	공통	[별첨1]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	원본	1
	4	공통	[별첨2]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	원본	1
	5	공통	[별첨3] 신청기업 자기진단서	원본	1
	6	공통	[별첨4] 안전보건 서약서 및 안전보건계획서	원본	1 ※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시 신청 기업 자체 양식 사용 가능
구비 서류	7	공통	사업자등록증	사본	1
	8	공통	법인등기부등본	사본	1
	9	공통	법인인감증명서	사본	1 ※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 명서 원본 제출
	10	공통	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	사본	1
	11	공통	최근 2년 재무제표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) 기업 신용평가등급서(공급기업)	사본	1 ※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※기업 신용평가등급서 관련 세부 사항은 지침[별표9] 참고 ※공고일 이전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, 신청서 제출 일 이전 가장 최근의 평가등급 서 제출 가능
	12	공통	가점 현황 증빙자료	사본	1 ※ 해당 시 제출
	13	공급기업	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	사본	1
	14	공급기업	신청 기술 관련 증빙자료	-	1 ※ 특허증(특허등록원부 및 공고전문 포함), 시험성적서 성능확인서 등
	15	공급기업	설비의 사양파악 자료	-	1 ※ 카탈로그 등
	16	공급기업	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, 조감도 등	-	1
	17	수요기관	기준 시설의 주요 구성도	-	1
	18	참여기관	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증빙자료	-	1
	19	참여기관	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견적서 등 근거자료	-	1 ※ 자산취득비시설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포함 ※ 일반용역비는 산출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포함
	20	공통	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-	1

※ 타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원본대조필 후 사본을 스캔하여 제출

덧붙임3

평가 및 가·감점 기준

가. 서면평가 기준

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평가방법
사업목적 부합성 (40)	사업목적 부합성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제시된 과제의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이 상생 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추진 목적과 부합하는지 평가한다.- 동 프로그램으로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타 신청과제에 우선하여 추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지 평가한다.
	사업목적 달성도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과제에서 설정한 목표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정도를 평가한다.
	사업 적용기술 혁신성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적용 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등 기술 수준을 평가한다.- 적용 기술의 공급기업 자체 개발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성과 확대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.
사업적정성 및 기업역량 (25)	목표·계획 적절성 및 체계성(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환경개선 효과 등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을 평가한다.- 사업계획 제출 시 제시된 과제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한다.
	기업의 재무현황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【별표9】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을 통해 공급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한다.
사업예산 합리성 (15)	사업예산 적정성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총 사업비 중 환경설비 설치 비용의 비중과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산출이 타당한지를 평가한다.-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보조사업 수혜이력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편중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.
	사업비편성 타당성(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사업비 계상 시 사업관리지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.
기대효과 (20)	사업성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향후 사업화 목표 및 판로 전망을 평가하여 사업화 기대효과를 평가한다.
	환경·사회적 효과성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사업 추진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비용절감 등 환경적·사회적 기대효과를 평가한다.

나. 선정평가 기준

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평가방법
사업목적 부합성 (30)	사업대상 관련성(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증 설비 설치 시 환경오염물질 및 탄소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성을 평가한다. - 설비가 설치되는 장소가 본 협력사업과 기술 실증에 적합한 현장인지 평가한다. - 현장적용 실적 및 기 매출액 등 사업화 추진현황 등 사업화 진행여부로 동 프로그램(사업)을 통한 현장실증 필요성을 평가한다.
	혁신 기술 여부(1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상용화 기술·설비와 차이점 및 우수성을 평가한다. - 사업 전·후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 효율이 향상 가능성 을 평가한다.
과제수행체계 및 역량 (20)	과제수행체계 적절성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설비공급기업 및 설비수요기관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가 적절한지 평가한다.
	과제수행 경영역량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업내용을 구성하였는지 평가한다. - 재무현황, 생산능력, 기술개발능력 등 인적·물적으로 원활히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평가한다.
사업내용 (15)	사업계획서의 완성도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음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실증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목표 설정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·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용의 적정성 · 사업내용의 구체성, 실효성 ·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적정성 등
	사업비 산정 적정성(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입하는 예산 대비 산출효과의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한다.
기술 혁신성 (20)	처리성능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용 기술의 처리효율·시간 등 성능의 우수성과 사후 성능·품질의 재현을 위한 완성도를 평가한다.
	경제성(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기술 대비 시설의 설치비용, 유지관리비의 절감 등 경제성을 평가한다.
	유지관리 편의성(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속적인 성능 구현을 위한 운전·제어, 작업요원의 숙련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을 평가한다 - 과제 추진 및 설비의 운영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.
기대효과 (15)	사업성(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향후 사업화 목표 및 추진계획등으로 판로 전망을 평가 한다.
	환경·사회적 효과성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음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·설비의 사업화를 통한 기대 효과를 평가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환경적 측면 : 해당 제품·설비로 인한 환경개선 사항, 향후 환경개선 효과 등 · 사회적 측면 : 환경 현안과의 연계성, 일반 국민 체감 가능성 등

다. 가점 기준

순번	항 목	가점	비고
1	(수요기관)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 관리 대상 사업장 - 상기 법령 적용 시기가 지침 제9조에 따른 사업 공고일 기준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종 추가 1점 부여	1 (최대2점)	
2	(수요기관) 최근 2년 이내 "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사업"(시범사업 포함) 참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 -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연속 참여 시 2점 적용	1 (최대2점)	
3	(공급기업) 기후에너지환경부 "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" 선정기술 (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) - '우수성과 20선 최우수 성과' 또는 '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' 선정 기술 2점 적용	1 (최대2점)	
4	(공급기업) "기후환경에너지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"에서 최종평가 결과가 '보통' 이상인 과제 성과물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(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종료과제)	1.5	
5	(공급기업)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및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	1.5	
6	(공급기업) "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" 최종평가 결과 '탁월'로 평가 받은 기업(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)	1.5	
7	(공급기업) 환경신기술 인증 및 환경기술 검증기업 (공고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) *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7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「환경 신기술인증 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/ 해당기술에 한함	1	증빙 제출
8	(공급기업) 환경성적표지 인증, 환경표지인증, 녹색인증 기업 (공고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) *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17조 및 제18조,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제60조 / 해당기술에 한함	1	
9	(공통) 환경영영 우수기업(평가등급 A~AAA) (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) *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(enVinance)	1	
10	(공통) 우수환경업체 지정기업(공고일 기준 지정기간 내) *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제7조의6	1	
11	(공통) 사업 사전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수요기관, 공급기업 (개별 적용)	0.5 (최대1점)	

* 총 가점은 서면평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최대 8점 적용하며, 동일항목 중복 불가

라. 감점 기준

항 목	감점
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 프로그램(사업)의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 협약 중지(협약 정식 체결 전 포함)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* '후보과제'에서 사업 참여 취소신청의 경우 해당 없음 * 공급기업 · 수요기관 개별 적용	8점

덧붙임4

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

구분		사용 용도	계상 및 산정기준
비목	세목		
유형자산	자산취득비	1. 실증화 대상 설비를 포함한 공작물, 대규모 기계, 기구 등의 물품 구입비	1. 실소요 경비를 계상 2. 구입한 장비의 설치 시 소요되는 금액을 내역에 포함 - 자체 제작 시 공급기업의 노임비 및 제경비 제외
건설비	시설비	1. 실증화 대상 설비 외 잡자재를 포함하여 공사성 비용으로 부대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	1. 제비율을 포함한 실소요 경비를 계상 2. 자재 및 운송·설치에 소요되는 세부내역 포함 - 공급기업의 노무비 및 제경비 제외 ※ 공급기업과 수요기관 간 장비 및 시설의 사용료, 임차료 등 불가
운영비	일반용역비	1.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	1. 정산관련 검증용역비 (최대 2백만원까지 가능)
	일반수용비	1. 측정분석비용	1. 실소요 경비를 계상 - 개인인증시험기관 및 전문기관 분석 수수료 ※ 분석 시약 및 키트, 분석기기 산정 불가

※ 사업과 직접 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하며, 상기 제시된 사용 용도 외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불가

※ 미지원 항목 : 부가가치세, 기존시설 철거비, 조달수수료, 지급보증보험료, 컨설팅 기관 용역 비용, 사업비 원가계산비용, 예비품 등